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운동사) 채용시험 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의거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운동사)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담당직무 내용
운동사	임기제 지방보건 서기보	1명	임용일 ~2년	구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체력증진을 통한 운동처방 및 상담 - 비만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 기타 사업 업무지원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요건

구 분	응시자격요건
경 력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운동처방,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사업 분야 업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1항4호 및 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우대조건	○ 생활체육지도사 2급 이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보건소 및 관련기관에서 해당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보수 수준

○ 보수 : 28,943천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9급(상당)	54,678	-

※ 연봉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5.(목),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방문접수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5천원)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해 유효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6층(보건행정과)

- 접 수 처 : 구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6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 마감일까지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6. 11. 3.(화) ~ 11. 5.(목)	우편 및 방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1. 11.(수)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6. 11. 13.(금)예정	구로구 보건소 강당(9층)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 11. 20.(금)까지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4.(금)까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설정·시행
- ※ 우대 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5,000원]

- 응시수수료 : 5,000원(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인증기 날인)
- ※ 수입증지 미부착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 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로알림(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2-860-3268)